

붙임 2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조치사항

□ 적용기간 : 2020. 12. 8.(화) 0시 ~ 12. 28.(월) 24시까지 (3주간)

(추가조치 1) 겨울 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25단계 : 12 11.(금) 0시 ~ 12 28.(월) 24시

(추가조치 2) 우리市 강화된 방역조치 추가 : 2020. 12. 13. 시행 ~ 별도 해제 시까지

- 1)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 : 2020. 12. 13.(일) ~ 별도 해제 시
- 2) 인천대공원, 월미공원 폐쇄 : 2020. 12. 15.(화) ~ 별도 해제 시
- 3)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* 1/2 의무시행 : 2020. 12. 15.(화) ~ 별도 해제 시
* 대상자 : 현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, 소방업무, 필수요원 등 제외
- 4)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 : 2020. 11. 23.(월) ~ 별도 해제 시 [기존 조치 유지]

(추가조치 3)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추가: 12 19.(토) 0시 ~ 12 28.(월) 24시

※ (적용지역) 수도권(서울.인천.경기)

- 1) **출입점** : 집합금지
- 2) **무인카페** : 방역지침 의무화
- 3) **직장근무**
 - 민간기업에서 재택근무, 시차출 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여 밀집도 최소화 권고
 - 원격수업 확대, 학원 집합금지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서 재량적으로 맞벌이 부부 등에 재택근무 · 돌봄휴가 부여 협조 요청
- 4) **종교활동**
 - 예배 · 미사 · 법회 · 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과 모임 · 식사 금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종교계에 협조 요청
 - 기도원 등 종단 미소속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등 강화
* 최근 충남도 미소속 기도원에서 집단감염 발생
- 5) **연말 연시 파티**
 - 수도권의 숙박시설 · 파티룸 주관 파티 · 행사 금지 중(12.1~12.28)이나,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· 행사도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
 - 숙박업계에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등 협조요청
- 6) **집합교육**
 - 부처 ·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면 집합교육 · 훈련과정은 연말까지 중단하거나 비대면 전환
* 경찰학교 등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
 - 민간기관 ·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 등 집합교육도 연기 · 취소 또는 비대면 전환 협조요청
- 7) **주민센터 프로그램**
 - 지자체별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문화 · 교육 강좌 등의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
- 8) **식당**
 - 식사 전 · 후로 마스크 반드시 착용, 식사 중 대화 자제 지속 안내
 -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 · 가림막 설치 권고 등
- 9) **요양병원 · 요양시설**
 - 관계부처 · 기관 및 지자체 합동 집중점검 실시
- 10) **스키장**
 - 최근 집단감염 등 고려하여 스키장 및 스키하우스 · 휴게실 등 부대시설 방역관리 철저
 - 특히, 비수도권 지역 스키장의 경우, 수용 가능 인원의 1/3만 입장을 허용하는 2단계 조치에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추가하는 2.5단계 조치 실시 요청

□ 조치사항

구 분 (1)	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 ※ 강화군, 웅진군 제외 ※ 1.5단계 조기시행 11.21.0시~12.6.24시 (식당,카페)	2단계 2020. 11. 24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 ※ 일부 강화조치 12. 1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	2.5단계 2020. 12. 8.(화) 0시 ~ 12.28.(월) 24시 ※ 겨울 스포츠시설 12. 11. ~ 12. 28. ※ 우리市 방역강화 12.13. ~ 별도 해제 시 ※ 방역지침 의무화 12.19. ~ 12.28.	3단계
	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핵심지표	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(명)	(수도권) 100명 미만 (타권역) 30명 미만 (강원제주는 10명 미만)	(수도권) 100명 이상 (타권역) 30명 이상 (강원제주는 10명 이상)	※ 3가지 상황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.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독 300명 초과	전국 400명 ~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 한 환자 증가	전국 800명 ~ 1,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 한 환자 증가
	주 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(명)	(수도권) 40명 미만 (타권역) 10명 미만 (강원제주는 4명 미만)	(수도권) 40명 이상 (타권역) 10명 이상 (강원제주는 4명 이상)	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 높음		
보조지표		(전체)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, 역학조사 역량, 감염재생산 지수($r>1$), 집단감염 발생 현황 (2.5~3단계)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, 방역망 내 관리 비율				
핵심 메시지		▲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,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	▲ 지역유행 시작,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	▲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 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,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	▲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· 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최 대한 자제	▲ 전국적 대유행,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 르며,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구 분 (2)	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 ※ 강화군, 웅진군 제외 ※ 1.5단계 조기시행 11.21.0시~12.6.24시 (식당, 카페)	2단계 2020. 11. 24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 ※ 일부 강화조치 12. 1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	2.5단계 2020. 12. 8.(화) 0시 ~ 12.28.(월) 24시 ※ 겨울 스포츠시설 12. 11. ~ 12. 28. ※ 우리시 방역강화 12.13. ~ 별도 해제 시 ※ 방역지침 의무화 12.19. ~ 12.28.	3단계
	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마 스 크 착 용	의무화	▲ 중점알려진시설 ▲ 대중교통 ▲ 집회, 시위장 ▲ 의료기관 · 약국 ▲ 요양시설 ▲ 주야간보호시설 ▲ 종교시설 ▲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 ▲ 지자체에 신고, 협업된 500인 이상 모임, 행사 ▲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	▲ 중점알려진시설 ▲ 대중교통 ▲ 집회, 시위장 ▲ 의료기관 · 약국 ▲ 요양시설 ▲ 주야간보호시설 ▲ 종교시설 ▲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 ▲ 지자체에 신고, 협업된 500인 이상 모임, 행사 ▲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※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, 카페는 50㎡ 이상까지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	▲ 실내 전체 ▲ 위험도 높은 실외* 활동 * 집회, 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	▲ 실내 전체 ▲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	
	권 고	▲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	▲ 이외 밀집된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	실외에서도 항상		
모임 · 행사 ※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		▲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및 방역수칙 의무화 ◎ 신고협의 부서 ▲ 시 공공행사 : 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생활방역팀) ▲ 군·구 공공행사 : 군수, 구청장 ※ 그 외 모임, 행사 : 개최지의 군수 구청장에 신고 협의 ▲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(2020.10.13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 현행 유지	▲ (500명 이상 행사) 신고협의 등 기존 조치 유지 ▲ (집회, 시위, 축제, 대규모콘서트, 학술 행사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▲ 대규모콘서트 :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▲ (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의 4㎡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(추적추진 선택) ▲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(2020.10.13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 현행 유지 ▲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(2020.11.23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	▲ 100인 이상 금지 (대면으로 모이는 사적, 공적 집합모임 행사) * 동일목적, 동일장소, 일시적 모임 행사 ▲ (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)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(100인 기준 마작) 〈정부 12.1~12.7〉 ▲ (사적모임) 모든 모임 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 취소 강력 권고 ▲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금지 ▲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(2020.11.24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 변경 ▲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(2020.11.23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 유지	▲ 50인 이상 금지 (대면으로 모이는 사적, 공적 집합모임 행사) * 동일목적, 동일장소, 일시적 모임 행사 ※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, 예외 허용 ※ 시험 등의 경우,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▲ (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) 시설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(50인 기준 마작) ▲ (사적모임) 모든 모임 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 취소 강력 권고 ▲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금지 ※ 개인 추측 파티, 행사 금지 강력 권고 (12.19~12.28) ▲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(2020.11.24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 변경 ▲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(2020.11.23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 유지	▲ 10인 이상 금지
스포츠 행사		▲ 관중 입장(50%)	▲ 관중 입장(30%)	▲ 관중 입장(10%)	▲ 무관중 경기	▲ 경기 중단

구 분 (3)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 ※ 강화군, 웅진군 제외 ※ 1.5단계 조기시행 11.21.0시~12.6.24시 (식당, 카페)	2단계 2020. 11. 24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 ※ 일부 강화조치 12. 1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	2.5단계 2020. 12. 8.(화) 0시 ~ 12.28.(월) 24시 ※ 겨울 스포츠시설 12. 11. ~ 12. 28. ※ 우리 시 방역강화 12.13. ~ 별도 해제 시 ※ 방역지침 의무화 12.19. ~ 12.28.	3단계
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민간 시설	중점관리시설 (9종) ①~⑤유흥시설5종 * (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직접 판매홍보관 ⑨식당, 카페 ※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	▲ 이용인원 제한 확대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※ 식당, 카페 (일반음식점, 휴게음 식점, 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, 신고면적 150㎡ 이상) ▲ 이용인원 제한 강화 ▲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1) 유흥시설 5종* (시설면적 8㎡당 1명인 원제한, 테이블간 이동 금지) ⇒ 8개 구관 적용 ※ 다만, 강화군, 웅진군은 유흥시설 (5종)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 유지 〈연 11.21.~12.6〉 2) 식당, 카페 (일반음식점, 휴게 음식점, 제과점영업, 시설허가, 신고면적 50 ㎡ 이상은 11.21.(토) 0시 ~ 12.6. 24시 1.5 단계 조기시행) ▶ 단, 50㎡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 〈연 11.21.~12.6〉	▲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▲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 판매등직접판매홍보 관은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 영 중단 등 ▲ 음식점은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▲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	▲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등직접판매 홍보관/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/ 집합금지 추가(총 8종) ▲ 음식점은 21시 ~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▲ 카페는 포장배달 만 허용 〈정부 12.19.~〉 ▲ 홀덤펍 : 집합금지 ▲ 식당 : 식사 전후 마스크 반드시 착용, 식사 중 대화 자제 / 칸막이거림막 설치 권고	▲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▲ 식당, 카페 제한 운영 허용 - 8㎡당 1명 인원제 한 추가 - 카페는 포장배달 만 허용 - 음식점은 21시 이후 로 포장배달만 허용
	일반관리시설 (15종)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(교습소 포함)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·워터파크 ⑩오락실, 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 이.미용업 ⑬상점마트 백화점 (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종합소매업 300㎡ 이상) ⑭독서실,스터디카페 ⑮ 겨울 스포츠시설 추가(12.11. 0시~) (스키장, 빙상장, 눈 썰매장) ※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	▲ 정상 운영하되,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1) 마스크 착용 2) 출입자 명단관리 3) 환기, 소독	▲ 시설 특성에 따 라 이용인원 제 한(4㎡당 1명), 좌석 띄우기 등	▲ 이용인원 제한 확대 확대 / 음식 섭취 등 위 험도 높은 활동 금 지 ▲ 실내체육시설 - 21시 이후 ~ 익일 05까 지 운영 중단 유지 〈정부 12.1~12.7〉 ※ 강화된 GX류(춤, 태보, 스카딩, 에어로빅, 스텝, 킥복싱 등) 시설 집합금지 〈연 12.1~12.7〉 ▲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중단 (수영장은 제외) 〈정부 12.1~12.7〉 ▲ 목욕장업 8㎡당 1 명 인원제한하되, 사우나, 한증막 시설(발 한실) 운영금지 추가 조치 〈정부 12.1~12.7〉 ▲ (학원, 교습소) 관악기, 노래 등 비 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※ 정악, 국악, 실용음 악, 노래교실 등 학원, 교습소, 문화센터 등 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※ 21학년도 대입을 위 한 교습은 제외	▲ 실내체육시설, 학원(교습소) 집합 금지 추가(2종) ※ 다만, 2021학년도 대입 교습은 허용 /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과정은 허용하며(21. 12. 1. 0시 ~ 익일 05시까지 중단) ▲ 결혼식장, 장례식장 개 별건당(50명 미만) ▲ 직업훈련기관, 영화관 / PC방 / 오락실, 멀티방 / 독 서실, 스터디카페 / 놀이공원, 워터파크 / 이.미용업 / 상점마트 백화점(300㎡ 이상)은 21시 ~ 익일 05까지 운영 중단(8종) ▲ 공연장(좌석 두 칸 띄우기) ▲ 목욕장업 16㎡당 1명 인원제한 / 사우나, 한증막, 찜질 시설 운영금지(유지) ▲ 겨울 스포츠시설 (실내) 집합금지 (실외) 방역지침 의무화 (12. 11. 0시 ~) ⇒ 일반관리시설 지정 ▲ 위반 시 원스트 라이크아웃제

구 분 (4)	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 ※ 강화군 웅진군 제외 ※ 1.5단계 조기시행 11.21.0시~12.6.24시 (식당.카페)	2단계 2020. 11. 24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 ※ 일부 강화조치 12. 1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	2.5단계 2020. 12. 8.(화) 0시 ~ 12.28.(월) 24시 ※ 겨울 스포츠시설 12. 11. ~ 12. 28. ※ 우리 시 방역강화 12.13. ~ 별도 해제 시 ※ 방역지침 의무화 12.19. ~ 12.28.	3단계
	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민간 시설	기타시설 (중점·일반 23종 외 시설)	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 운영		- 중점.일반시설 외 실내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〈정부 12.1~12.7〉 ▲ 〈아파트 내 편의시설〉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 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 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중단	▲ 이용인원 제한 (4㎡당 1명 등) ▲ 〈아파트 내 편의시설〉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 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 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중단 ▲ (무인카페) 방역지침 의무화	▲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▲ 이 외 시설도 운영 제한
국공립시설		▲ 경륜.경정.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%로 제한 ▲ 나머지 국공립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 (인원제한 없음) 〈인천시〉 1) 정부방침 수용 ▶ 인천대공원. 월미 공원 / 실내외 공공체 육시설 인원제한 없 음) 2) 일부 조정 ▶ 월미바다열차 ⇒ 정원의 60%로 인원제한 운영 ▶ 어린이과학관 ⇒ 정원의 85%로 인원제한 운영	▲ 경륜.경마 등 20%로 인원제한 ▲ 이외 국공립시설 50%로 인원제한 〈인천시 조정〉 ▶ 기존 조치 유지 1) 월미바다열차 ⇒ 정원의 60%로 인원제한 운영 2) 어린이과학관 ⇒ 정원의 85%로 인원제한 운영	▲ 경륜.경마 등 중단 ▲ 이 외 시설 운영 (30%) 이내 ※ 월미바다열차, 어린이과학관 : 30% 인원제한 운영 (인천시)	▲ 국공립체육시설 /경륜. 경마. 경정 카지노 등 운영중단 ▲ 이 외 시설 운영 (30%) 이내 〈인천시 12. 13.〉 ▲ 월미바다열차 운영중단(12.13.~ 별도 해제 시) ▲ 인천대공원 · 월미공원 폐쇄 (12.15.~별도 해제 시) 〈정부방침12.19.~〉 ▲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단(12.19.~12.28.)	▲ 실내·외 국공립시설 운영중단

구 분 (5)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 ※ 강화군, 웅진군 제외 ※ 1.5단계 조기시행 11.21.0시~12.6.24시 (식당,카페)	2단계 2020. 11. 24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 ※ 일부 강화조치 12. 1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	2.5단계 2020. 12. 8.(화) 0시 ~ 12.28.(월) 24시 ※ 겨울 스포츠시설 12. 11. ~ 12. 28. ※ 우리 시 방역강화 12.13. ~ 별도 해제 시 ※ 방역지침 의무화 12.19. ~ 12.28.	3단계
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포함)	<정부 방침>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*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, 시설별 위험도·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<인천시>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안전형 운영기준 설정 * 단,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				▲ 휴관·휴원 권고 ▲ 긴급돌봄 등 유지
교통시설	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		▲ 마스크 의무화 ▲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 (물·음료는 허용)	▲ 마스크 착용, 차 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(국제항공편 제외) ▲ KTX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 한 권고(항공기 제외) <인천도시철도 1.2호선> 30% 감축운영 (21사·익일 01사 12. 8 ~)	- KTX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
종교활동 ※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	▲ 정구예배·미사· 법회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▲ 모임·식사·자제 권고 ▲ 숙박 행사 금지	▲ 정구예배·미사· 법회 등 좌석수의 50% 이내(좌석 수 띄우기)로 제한 (인천시 조정) ▲ 모임·식사 금지 (정부방침) ▲ 강론 및 설교 시, 상당한 거리가 있고 (3m 이상) 아크릴 판 을 설치한 경우(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) :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※ 강화군, 웅진군 이 1단계 현행유지 에도 공통 적용	▲ 정구예배·미사· 법회 등 좌석수의 20% 이내로 제한 ▲ 모임·식사 금지	▲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(참여인원 20명 이내) ▲ 모임·식사 금지	▲ 1인 영상만 허용 ▲ 모임·식사 금지
학교 · 유치원	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	밀집도 2/3 준수	밀집도 1/3 원칙(고 등학교 2/3) 최대 2/3 내 에서 운영 가능	밀집도 1/3 준수	원격수업 전환
직장근무	▶ 공공기관 - 기관·부서별 작업반을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(예 : 전 인원의 1/5)	▲ 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(예 : 전 인원의 1/3)	<인천시 12. 13.> ▲ 공공기관 재택 근무 등 대상자* 1/2 의무시행 (12.15.~별도 해제 시) * 대상자 : 현원에서 코로나19 대응, 대민업무, 소방업무, 필수요원 등 제외 ※ 정부방침 (1/3 재택 권고)		▲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
	▶ 민간기업 - 공공기관 수준의 근 무형태 개선 권고 / 재 택근무가 어렵고 밀폐 밀집 사업장(콜센터, 유 통물류센터 등)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	-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·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,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※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: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			

□ 우리市 행정조치 현황

현행유지	1)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- (적용기간) 2020. 8. 26. 0시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2020. 10. 11. / (시행) 2020. 10. 12. - (과태료)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 2)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- (과태료 처분 시행기간) 2020. 11. 13. 0시 ~ 별도 해제 시 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.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 ※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- (적용기간) 2020. 8. 20. 15시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2020. 10. 12. / (시행) 2020. 10. 13. / (과태료) 10만원 이하 ※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- (적용기간) 2020. 10. 14. 0시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2020. 11. 12. 24시 / (과태료 시행) 2020. 11. 13. 0시 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.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 3)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※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- (적용기간) 2020. 11. 24. 0시 ~ 별도 해제 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 ※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- (적용기간) 2020. 8. 24. 0시 ~ 10. 11. 24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 ※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- (적용기간) 2020. 10. 13. 0시 ~ 별도 해제 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 4) 인천도시철도 심야시간대(21시~01시) 30% 감축운영 - (적용기간) 2020. 12. 8. ~ 별도 해제 시 5) (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) 우리市 방역조치 강화(2020. 12. 13. 시행) ①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(2020. 12. 13~ 별도 해제 시) ② 인천대공원·월미공원 폐쇄(2020. 12. 15. ~ 별도 해제 시) ③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/2 의무시행(2020. 12. 15. ~ 별도 해제 시) ④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(2020. 11. 23. ~ 별도 해제 시) ※ 유.초.중.고 원격수업 전환(교육청 2020. 12. 15. ~ 별도 안내 시)
조치해제	※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(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행정조치 해제 2020. 9. 14. 0시 - (과태료) 2020. 9. 3. 0시 ~ 9. 13. 24시

□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현황

구 분	대 상 시 설
전자출입명부 의무화	▶ 중점관리시설(9종) - 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홍보관, 식당·카페 ※ 다만 식당·카페 12. 7.부터 과태료 부과 ▶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
출입명부 의무화 (전자 또는 수기명부 선택)	▶ 일반관리시설(13종) -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 등, 실내체육시설, 이·미용업, 독서실·스터디카페 ※ 일반관리시설 중 상점·마트·백화점(종합소매업 300㎡ 이상) <u>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</u>